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장문혁의원의외 5인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조례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동일한 반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 감사, 조사, 증인, 참고인에 대한 정의
- 감사 및 조사 실시 및 대상기관·사무 규정(안 제4조~제9조)
 - 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계획서, 활동기간,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감사 및 조사의 실시장소·방법 및 결과처리(안 제10조~제14조)
 - 감사 및 조사의 실시 장소, 방법, 증인선서, 증인보호 등과 결과보고 및 결과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15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3. 관련법령(또는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동일한 반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